제주시 도시형생활주택 제주 베이앤베일리 입주자 모집공고

Bay & Bailey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은 현장에 샘플하우스를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임.
※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일정 및 견본주택 관람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예정임.
※ 샘플하우스 방문 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할 때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 입국
- 마스크 미 착용자
- 체온이 37.5℃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측정)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샘플하우스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 03. 08(수)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상담 전화(064-743-3337)로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인지세 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전매 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 (2021.01.01.)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분양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 본 공동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13965호(2023. 03. 0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허가번호 : 주택과 - 23397 (2016. 10. 24)]

▣ **공급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호일동 1865번지 외 5필지
▣ **대지면적** : 9,926.00㎡
▣ **건축물 연면적** : 6,746.6764㎡
▣ **공급 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 지하 1층 ~ 지상 4층 8개동 64세대(1층~4층)
▣ **주차대수** : 계획 주차대수 70대 (지상 70대)
▣ **공급 대상 및 공급 금액**

■ 공급 대상

(단위 : ㎡)

구분	공급세대수	세대별 계약 면적				계약 면적	대지 지분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 공용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 계			
84A (2층~3층)	32	84.5693	17.9708	102.5401	2.8767	105.4168	155.0937
84B (1층)	16	84.5693	17.9708	102.5401	2.8767	105.4168	155.0937
84C (4층)	16	84.5693	17.9708	102.5401	2.8767	105.4168	155.0937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 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TYPE	TYPE	동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입주지정일
84A	84.5693A	101, 102, 106, 108동	2층	8	132,882,400	341,697,600		474,580,000	47,458,000	427,122,000
	84.5693A	101, 102, 106, 108동	3층	8	134,618,400	346,161,600		480,780,000	48,078,000	432,702,000
	84.5693A	103, 104, 105동	2층	5	130,709,600	336,110,400		466,820,000	46,682,000	420,138,000
	84.5693A	105, 107동	2층	3	126,800,800	326,059,200		452,860,000	45,286,000	407,574,000
	84.5693A	103, 104, 105동	3층	5	133,316,400	342,813,600		476,130,000	47,613,000	428,517,000
	84.5693A	105, 107동	3층	3	130,275,600	334,994,400		465,270,000	46,527,000	418,743,000
84B	84.5693B	101, 102, 106, 108동	1층	8	138,961,200	357,328,800		496,290,000	49,629,000	446,661,000
	84.5693B	103, 104, 105, 107동	1층	8	135,920,400	349,509,600		485,430,000	48,543,000	436,887,000
84C	84.5693C	101, 102, 106, 108동	4층	8	160,675,200	413,164,800		573,840,000	57,384,000	516,456,000
	84.5693C	103, 104, 105, 107동	4층	8	158,502,400	407,577,600		566,080,000	56,608,000	509,472,000

▣ **공통사항**
- 본 공동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습니다.
- 상기 총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에서 층, 향, 구조 등을 감안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타입 별 공히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취득세(기존 세법상 등록세통합)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은 입주지정 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주택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 입주금의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는 사용승인 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기 대지 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계약 면적과 대지 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실축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 실제 시공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잔금납부 시 상호정산합니다. 또한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동주택은 외관의 통일성 및 소형주택의 기능성을 고려하여 일괄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며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공급금액 총액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임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각 타입 별, 층수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 신청 시 분양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03월 08일)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건만 신청가능하며, 동일인이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타입별, 층별을 선택하여 신청하며, 당첨 이후 다른 동호수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분양홍보관에서 청약 신청받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32조 제1항 및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 일정 및 청약 신청**

1. 공급 일정

구 분	청약 접수기간	청약 접수장소	당첨자 발표일	계 약 일	당첨자 공고
공동주택	2023. 03. 13. (9:00 ~ 16:30)	본 분양홍보관	2023. 03. 14. (14:00)	2023. 03. 15.(10:00~16:00) (본 분양홍보관)	본 분양홍보관

2. 청약신청금 및 납부 계좌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금융 기관	계좌 번호	예 금 주
2백만 원	청약 신청 계좌에 무통장입금	새마을금고	9002-1979-3156-8	교보자산신탁(주)

※ 분양홍보관 현장 수납은 하지 않으며, 반드시 청약 신청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입금 영수증 지참)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 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입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 금 영수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3. 추첨 방법
- 청약 신청은 주택형별에 따라 접수하고, 층·호수는 당첨자 발표일(분양홍보관에서 14시부터 무작위 공개 추첨 후) 분양홍보관에 공고합니다.

4. 청약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청약 신청서(본 분양홍보관 비치) • 본인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일 경우 청약자의 도장 • 본인 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 때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청약신청 금 납부영수증(무통장 입금증) • 청약신청 금 환불 계좌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 청약신청금(샘플하우스 현장 신청 시)
제 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 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 거소 신고 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법인	• 청약신청서(본 분양홍보관 비치) •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 인감계 제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법인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또는 청약신청금 납입 영수증 •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인 명의)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 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청약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5.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2023년 03월 27일 이후(10:00~16:00)
- 낙첨자 환불 : 청약 신청시 제출한 신청자 명의의 환불용 계좌로 온라인 입금됨(낙첨자에 대한 청약금 환불 시 기간 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비서류(환불용 계좌 미제출자)

구 분	구 비 사 항
본 인	• 청약신청접수(영수)증, 주민등록증, 청약 신청 시 사용한 도장 또는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제3자 대리인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서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6.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계약 시 청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됩니다.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분양홍보관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공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 체결 기간 및 장소
① 계약일시 : 2023년 03월 15일 [10:00 ~ 16:00] 본 분양홍보관 - 계약기간까지 계약을 하지 않으실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② 계약 장소 : 본 분양홍보관

2. 분양대금(계약금, 잔금)납부계좌

구 분	납부 계좌(계약금, 잔금)	예 금 주
금융기관	새마을금고	입금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요망
계좌번호	9002-1979-3156-8	
예 금 주	교보자산신탁(주)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시 계약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1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101 홍길동)
※ 중도금의 납부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 대금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3. 계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계약 체결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인감도장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통(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갖추어야 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동주택 계약 위임용)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위임 양식은 당사 분양홍보관 내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재외동포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법인 계약시	• 청약 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 등기부 등본 1통 및 사업자 등록증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③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호수 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합니다.
⑤ 샘플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 위치 등)등은 건축허가도서의 내용에 따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및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⑦ 본 공동주택은 30㎡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2개를 초과하여 공간을 구획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세대 구획 변경 등으로 인한 관련 법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사업 주체에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⑧ 발코니의 경우 분양보증 이행 대상이 아니며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택소유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없는 단순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홍보관을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로 선정 제한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분양보증**
- 분양보증인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내용

구 분	보증서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도시형생활주택	제01282023-101-0000900호	₩3,208,514,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u>분양계약자는 사업 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u>
※ <u>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u>

▣ **준공예정일** : **2023년 04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2023년 06월 예정)
▣ **입주예정일** : **2023년 05월 예정** (단, 신탁업자가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2023년 07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주 지정일까지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1. 입주 개시 약 1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입주자 사전 방문 일정을 통보하여 사전 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2. 도배공사, 도장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가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사전 방문입니다.
3.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유의 사항**
1. 공급면적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 × 0.3025)
2.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분양합니다.
3. 미분양 세대 발생 시 임의로 분양합니다.
4.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 과열지구 및 비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6.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7.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계약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8.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부대시설 및 대지는 공동주택 분양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당사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실별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이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2.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및 주변 환경 미확인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14. 각 동 1층에 설치된 테라스는 1층 분양자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며 각 분양자들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전 타입이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되며, 각 타입 별 확장 면적은 상이할 수 있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6. 샘플하우스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귀, 품절,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 시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17.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8. 샘플하우스는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 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샘플하우스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19.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샘플하우스를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 본 카탈로그,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샘플하우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2.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를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3. 건축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4. 샘플하우스는 B타입(1층)만 설치되며, 샘플하우스가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인쇄물, 카탈로그,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25. 샘플하우스 내 건립 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가구소품,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시공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레벨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6.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7. 외부 창호, 프레임사이즈, 유리 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8.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정화조 및 재활용 집하장 인접 세대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29.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 본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었고, 세대 간 벽은 내력벽체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31. 외부 창호는 분양가 포함이며,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 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 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2.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이 폭. 높이 등의 협소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33. 분양홍보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34.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35.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37.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8.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9. 추후 경관조명이 설치되었을 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일부 세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0. 입주 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1. 본 건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은 향후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시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2.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43. 분양홍보관에 설치된 단지안내도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사항,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44.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5.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6. 추후 인접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등으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7. 입주 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48.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분양홍보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선택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면하나는 창호는 KS F 2292 에 의한 기밀성1등급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적용(보일러, 전동기, 펌프)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 현관에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 적용
실별 온도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적용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 통신감리
회사명	(주)종합건축사사무소선건축	(주)제이렉
감리금액	₩100,000,000	₩20,000,000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본 분양목적물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리산개발(주)"(이하 "위탁자"라 함), 수탁자인 "교보자산신탁(주)"(이하 "수탁자" 라 함), 시공사 우호건설(주), 만송종합건설(주)(이하 "시공사"라함) 및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본 특약은 본 계약 여타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 해석한다.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리산개발(주)가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리산개발(주)임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 (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리산개발(주)가 부담합니다.
- 리산개발(주)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매수인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리산개발(주) 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리산개발(주), 교보자산신탁(주), 우호건설(주), 만송종합건설(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의거 우호건설(주) 및 만송종합건설(주)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교보자산신탁(주)가 본 사업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최대 3개월 자동 연장되며,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며 동의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등록업자 : 교보자산신탁(주)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08호
-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사업 주체 및 시공사**

구 분	회사명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신탁사 / 시행수탁자	교보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A, B동 7, 8층 (서초동,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120-81-84768
시행사 / 시행위탁자	리산개발(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27길 12, 3층(양재동, 삼승빌딩)	211-88-87963
시공사	우호건설(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93(우동)	617-81-13622
	만송종합건설(주)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로63번길 12, 2층202호 (변동,만송빌라트)	314-81-47994

▣ **홍보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형로 23
▣ **분양문의** : ☎ 064)743-333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홍보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제주 베이앤베일리 홍보관

| 홍보관 : 제주시 신형로 23, 우주빌빌딩 1층 |